



# 제4차 산업혁명 시대 :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

김경환 변호사

##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

제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	기술 관점	데이터 관점
지능	AI 등	데이터를 통한 지능화
		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
융합	빅데이터 등	데이터의 융합
연결	IoT 등	데이터가 흐르는 상태



# 계약

-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가 없으면 법률적 불명확성 존재
- 상대적인 권리로서 보편타당성이 부족함
- 힘의 논리에 의하여 좌우됨

# 저작권

- **창작성을 갖춘 데이터만 보호됨**
- **독점적 권리 / 저작인격권**
- **복잡한 지분권 구조 및 각 지분권 침해 주장 필요**

## DB권 (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)

- 개별데이터에 대한 보호장치가 아님
- DB 형태의 제약
- 독점적 권리
- 복잡한 지분권 구조 및 각 지분권 침해 주장 필요

- 공개 데이터는 보호받지 못함
- 높은 비밀관리성 요건



## 개인정보자기결정권

- 이 권리는 헌법(해석)적 권리로서, 데이터에 대한 투자와 노력에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어, 데이터 가공자의 보호장치가 없음
- 투자와 노력에 대한 불확실성 제공으로 데이터 경제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
-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는 부족하고, 반드시 '법률'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함

# 데이터 소유권의 성질

## ○ 비독점성

얼굴 데이터 ⇒ 사진 데이터 ⇒ 건강 데이터  
⇒ 측정 데이터 ⇒ 성격 데이터  
⇒ 미기준 데이터

## 데이터 소유권의 전제 (EU 백서)

- 추적 의무(a traceability obligation)
  - 투자와 노력의 투입주체의 결정이 중요함
  - 데이터 소유권의 합법성 입증 필요  
(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)
  - 데이터와 함께 추적로그가 같이 전송되어야 함
- 규범적 해결이 타당하지 않을까?
  - 예컨대 등록 제도

## 데이터 소유권의 효과

- 데이터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명확하며 일관성 있는 법적 규율  
⇒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도움
- 데이터 가공 또는 투자·노력에 대한 보상 제공  
⇒ 데이터 경제 발전에 이바지, 담보권 등 파생권리, 상속권
- 데이터의 사유화 심화로 데이터의 공공성 약해짐  
⇒ 견제 요소로서 '데이터 공유' 제도 필요

# 데이터 공유 제도

- 개인정보 정보주체 의사에 의한 데이터 공유
  - 데이터 이동권 보장
  -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(일본의 정보은행, 미국의 블루버튼)
- 행정기관에 의한 데이터 공유
  - 공익데이터 지정 및 데이터 공유 결정
- 법령에 의한 데이터 공유
  - 기반데이터 지정 및 데이터 공유 보장

**감사합니다.**